

제주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1나147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전희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경훈

변 론 종 결 2023. 4. 10.

판 결 선 고 2023. 6. 12.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525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문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8.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205,702,0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5,702,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C의 소극재산 관련 주장

(1) 제1심은 주식회사 O이 2017. 1. 19. 이 사건 토지에 한 가압류(청구금액 300,000,000원)가 C의 2017. 1. 23.자 해방공탁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청구금액을 C의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C이 해방공탁을 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3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원인이 된 매매예약 당시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금액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F동 건물에 대하여 2017. 2. 1. 근저당권자 Q, 채무자 C, P,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C이 위 채권최고액 상당액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금액 또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관련 주장

D동 건물이 분담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원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5583호)에서 C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지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해방공탁을 한 것”이라며 지인에 대한 300,000,000원 채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도 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판사 황방모, 판사 이황선